

해 양 수 산 부

훈계 · 시정 요구

제 목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동해시, 고성군

관 련 자 동해시 ○○○○과(전 고성군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2. 2. 6.부터 2014. 1. 26.까지 고성군 ○○○○○과에서 근무하면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정부주도의 수산자원관리 한계에서 벗어나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토록 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한 어업인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성군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총 16개소 1,56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표 1]과 같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

연도	공동체명	사업비(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924,000	462,000	369,600	92,400
2013	○○1리어촌계	80,000	40,000	32,000	8,000
	○○○유자망협회	64,000	32,000	25,600	6,400

	○○자망협회	120,000	60,000	48,000	12,000
	○○○○협회	75,000	37,500	30,000	7,500
2014	○○○유자망협회	64,000	32,000	25,600	6,400
	○○어촌계	75,500	37,750	30,200	7,550
	○○어촌계	80,000	40,000	32,000	8,000
	○○1리어촌계	75,500	37,750	30,200	7,550
2015	○○어촌계	80,000	40,000	32,000	8,000
	○○○○협회	80,000	40,000	32,000	8,000
	○○채낚기협회	50,000	25,000	20,000	5,000
	○○○유자망협회	80,000	40,000	32,000	8,000

1. 부적정한 사업계획 심의 없이 확정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이하 “자율관리어업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르면 공동체는 사업계획 수립 시 자체 규약에 의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 어업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집행주체(시·도 또는 시·군)는 육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서가 육성사업비에 의한 사업으로 적절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육성사업비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사업 계획서의 사업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거나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율관리어업 관리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육성사업비는 공동체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작업장, 어업용 창고, 가공처리시설, 사료저장시설, 공동판매장 등 기타 수산자원 보호와 공동체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또는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어선어업 공동체에 한해 친환경어구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 ○○○○과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

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가 육성사업비에 의한 사업으로 적절한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사업 계획서의 사업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거나 보완을 하여야 한다.

고성군 ○○○○과는 2013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대상으로 선정된 ○○○○협회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요청(2013. 6. 4.), ○○○○협회에서 [표 2]와 같이 자율관리어업 관리규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친환경 미끼¹⁹⁴⁾를 구매하겠다고는 내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2013. 10. 10.)하였다.

[표 2] ○○○○협회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사업 계획

사업비(천원)				사업내용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75,000	37,500	30,000	7,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작업등 구입 : 17,200천원 · 냉난방기 구입 : 2,065천원 · 친환경 봉돌 구입 : 43,800천원 · 친환경 미끼 구입 : 8,000천원 · 전산기기 구입 : 1,240천원 · 해수양수기 구입 : 2,695천원

이에 고성군 ○○○○과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통해 사업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친환경 미끼 구입을 변경 또는 보완하도록 ○○○○협회에 요구하여야 하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없이 2013. 10. 28.에 사업계획 확정 및 교부결정(○○○○과-0000호)하여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2.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 소홀

「조세특례 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¹⁹⁵⁾으로 정하는 있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

19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을 받지 못하여 친환경어구로 볼 수 없음

195)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별표 6> 어업용기자재

- 양어장 필름, 양어장용 파이프, 어상자, 와이어로프, 구멍 부기·동의 등 29종류

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수산 보조 및 용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16조의2에 따르면 시·군은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업집행지침에서 재투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완료한 후 정산시 보조금 집행 사업비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사업비에서 공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환수하여야 할 환급금이 있으면 국가 등에 반납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성군은 [표 3]과 같이 ○○○○협회에서 수행한 2015년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으로부터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1,350천원을 공제하고 정산해야 하나, 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공제하지 않고 사업비를 정산하였다.

[표 3]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환수 내역

연도	공동체명	어업용 기자재	사업비(천원)				미환수액
			계	국비	지방비	자담	
2015	○○○○협회	구명복(100벌)	16,500	8,250	6,600	1,650	1,350

조치할 사항 동해시장은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정산 시 공제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속히 환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